# '세종 e편한세상 푸르지오'(샛골마을 4단지) 공공분양 입주자 모집공고

▣ 공급위치 : 행정중심복합도시 2-1생활권 M5블록 (세종특별자치시 다정동 일원)
▣ 공급대상 : 공공분양주택 15개동 1,25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세종 e편한세상 푸르지오 분양 상담전화 (044-863-9980)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등·초본, 등기부등본 및 소득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알 려 드 립 니 다

- ■ 2016.11.15.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6.12.14.(수)이며 (청약 신청 자격 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주택소유등의 판단기준일임)
- ■ 분양홍보관(견본주택) 개관은 2016.12.16(금) 10:00부터이며, 팸플릿은 견본주택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 견본주택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154-2 일원
- ■ 본 아파트는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오니,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포함) :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 불가함.(2순위로 청약 가능)
  - 재당첨 제한(특별공급 및 2순위 포함) :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또는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를 재당첨 제한 대상자에 추가(공공택지는 분양가상한제에 기 포함)
  - ※ 재당첨 제한기간 : 과밀억제권역 85㎡이하 – 당첨일로부터 5년, 85㎡초과 – 당첨일로부터 3년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85㎡이하 – 당첨일로부터 3년, 85㎡초과 – 당첨일로부터 1년
  - ※ 청약 조정대상지역 : 서울시·경기도 과천시·성남시 – 모든 주택 / 하남시·고양시·남양주시·화성시(동탄2에 한함) – 공공택지/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수영구 – 민간택지 /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 공공택지
  - ※ 과거 당첨사실 조회 방법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따라 금융결제원 주택 청약서비스(www.apt2you.com) 또는 KB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신청자, 배우자 및 세대원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하여야 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 제한기간 강화 : 당첨일로부터 3개월 → 당첨일로부터 1년 연장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무주택세대구성원(공급신청자가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만19세 이상인 자에 한함)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할 경우 중복청약으로 부적격처리 될 수 있음)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조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주택소유여부, 자산, 소득, 중복청약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됩니다.

※ "공급신청자격자"란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가. 세대주
- 나.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 다.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 불가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세대원 및 다음 각 목의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한다.
-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이면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 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등본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서류 제출 시 제출하셔야 하며 기한 내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 해당 주택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예정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 제1항에 규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게 일정물량을 우선공급하며, 신청접수 미달물량에 한해 일반공급으로 전환되니, 반드시 확정된 물량을 확인하시어 청약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해당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1항에 따라 지역 제한 없이 신청가능하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4조제1항, 동조 동항 제1의2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16-13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고 제2016-62호에 따라 공급세대수의 50%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주택건설지역(세종특별자치시)에 계속 거주한 자(2015.12.14. 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자)가 우선합니다.
- ■ 일반공급의 1순위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세종특별자치시 1년 이상 거주자) 청약자 중 낙첨자는 기타지역(세종특별자치시 1년 미만 거주자 포함)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또한 1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세종특별자치시 1년 이상 거주자) 신청접수 결과 미달세대는 기타지역 (세종특별자치시 1년 미만 거주자 포함)에게 공급하고, 기타지역 거주자 신청접수 결과 미달시에는 잔여물량을 각각 상기 거주지역별 배분비율을 적용·배분하여 차순위에게 공급합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4항 제1호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 군인으로서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저축(이하 "입주자저축"이라 한다)에 2년 이상 가입한 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에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거주지역이 수도권이 아닌 자가 수도권에서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본다. 〈개정 2016.8.12.〉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전용 85㎡이하 주택)이며, 해당 주택건설지역(세종특별자치시)은 「주택법」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투기 과열지구로 재당첨제한은 3년이 적용됩니다.
- ■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이 공고문의 신청자격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 신청자나 청약 신청자의 세대에 속한 자 중에 만65세 이상인 자,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미성년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의 경우 주택공급신청(특별·일반공급)시 최하층을 희망하는 때에는 우선배정하오니 청약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고령자세대 및 장애인세대의 신청자가 3명 이상 미성년자녀의 세대보다 우선합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본 아파트는 최저층이 2층인 주택형이 있으므로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 후 청약신청 하시기 바람)
-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 공고 | 접수 |  |  |  |  |  | 당첨자발표 (동·호수 발표) | 당첨자 서류접수 | 계 약 |
|---|---|---|---|---|---|---|---|---|---|
|  | 이전기관 특별공급 | 당해지역<br>다자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 기타지역<br>다자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 국가유공자/ 기관추천 특별공급 | 1순위 (당해/기타) | 2순위 (당해/기타) |  |  |  |
| '16.12.14(수) | '16.12.19(월)<br>(09:00~17:30) | '16.12.19(월)<br>(10:00~14:00) | '16.12.20(화)<br>(10:00~14:00) | '16.12.21(수)<br>(10:00~14:00) | '16.12.22(목)<br>(08:00~17:30) | '16.12.23(금)<br>(08:00~17:30) | '16.12.29(목)<br>(10:00) | '16.12.30(금)~'17.1.03(화)<br>(10:00~17:00) | '17.1.16(월)~18(수)<br>(10:00~17:00) |

-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공공주택 특별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전매금지 및 재당첨 제한

- ■ 금회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주택법」제64조 및「주택법 시행령」제73조제1항제2호[별표3의 2]에 따라,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날(2017.01.16.)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 ■ 금회 공급되는 주택(공공분양)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당첨자의 세대원 포함. 이하 이 공고문에서 같음)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3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되, 무순위 또는 선착순으로 공급받은 주택 제외)의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민영주택인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과 청약 조정 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청약 조정대상주택만 해당함)

##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청약 조정대상지역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부적격 당첨 후 착오기재 소명자로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및 1년간 재당첨제한 등)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 내지 제47조에 의하여 특별공급 (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제1항제12호 내지 제14호 해당하는 경우와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 현장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접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라며, 청약순위별 신청 접수일이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접수일에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자격별 해당 접수일 이외의 일자에는 접수불가함에 유의)
- ■ 신청접수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 공고문의 신청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여부, 거주지역, 재당첨제한여부,주택소유여부 및 소득·자산 등),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및 1년간 재당첨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 신청자의 입주자저축 순위, 납입인정금액 및 당첨자 확정 후 무주택여부, 재당첨 조회 등의 확인을 위해 가입은행 등 해당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청약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Ⅰ 공급규모 및 공급대상

### 1. 공급규모

■ 아파트 13~29층 15개동 전용면적 85㎡이하 1,258세대 (일반공급 205세대, 특별공급 1,053세대 포함)

| 블록 | 아파트코드 및 주택관리번호 | 타입 | 발코니 유형 | 세대당 주택면적(㎡) |  |  |  |  | 공유 대지 면적 (㎡) | 공급세대수 |  |  |  |  |  |  |  |  | 최고 층수 | 1층 세대수 | 입주 예정 시기 |
|---|---|---|---|---|---|---|---|---|---|---|---|---|---|---|---|---|---|---|---|---|---|
|  |  |  |  | 공급면적 |  | 그 밖의 공용면적 |  | 계약 면적 (계) |  | 계 | 특별공급 |  |  |  |  |  |  | 일반 공급 |  |  |  |
|  |  |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기타 공용 | 지하 주차장 |  |  |  | 이전 기관 | 다자녀 | 신혼 부부 | 생애 최초 | 노부모 | 국가 유공자 | 기타 특별 |  |  |  |  |
| M5 블록 | 합계 |  |  |  |  |  |  |  |  | 1,258 | 629 | 91 | 91 | 124 | 29 | 29 | 60 | 205 | 29 | 42 | '19. 06 |
|  | 2016001557-01 | 59A | 확장 | 59.9900 | 22.4300 | 6.0100 | 26.3100 | 114.7400 | 44.7879 | 420 | 210 | 31 | 31 | 42 | 10 | 10 | 21 | 65 | 29 | 12 |  |
|  | 2016001557-02 | 59B | 확장 | 59.9900 | 22.4300 | 6.0100 | 26.3100 | 114.7400 | 44.7879 | 10 | 5 | - | - | 1 | - | - | - | 4 | 14 | 0 |  |
|  | 2016001557-03 | 84A | 확장 | 84.9900 | 31.7800 | 8.5200 | 37.2700 | 162.5600 | 63.4527 | 650 | 325 | 48 | 48 | 65 | 16 | 16 | 32 | 100 | 29 | 25 |  |
|  | 2016001557-04 | 84B | 확장 | 84.9900 | 31.7800 | 8.5200 | 37.2700 | 162.5600 | 63.4527 | 12 | 6 | - | - | 1 | - | - | - | 5 | 8 | 0 |  |
|  | 2016001557-05 | 84C | 확장 | 84.9800 | 31.7800 | 8.5200 | 37.2600 | 162.5400 | 63.4453 | 138 | 69 | 10 | 10 | 13 | 3 | 3 | 6 | 24 | 29 | 4 |  |
|  | 2016001557-06 | 84D | 확장 | 84.9700 | 31.7800 | 8.5200 | 37.2600 | 162.5200 | 63.4378 | 28 | 14 | 2 | 2 | 2 | - | - | 1 | 7 | 28 | 1 |  |

### 2. 공급대상

- • 특별공급 미청약 분이 일반공급으로 전환되므로,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청약신청은 주택형별로 공급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하고, 공급물량이 없는 유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청약 신청한 주택형 변경이 불가함)
- • 금회 공급되는 분양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팸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0.3025 또는 ㎡÷3.3058)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공급유형별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지적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은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 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 Ⅱ 공공분양주택 공급조건

### 1. 공급금액(발코니 확장금액(부가세포함) 포함)

(단위 : 천원)

| 블록 | 주택형 | 타입별 | 층별 | 동별 | 주택가격 | 계약금 (10%) | 중도금(60%) |  |  |  |  |  | 잔금 30% |
|---|---|---|---|---|---|---|---|---|---|---|---|---|---|
|  |  |  |  |  |  |  | 1회(10%) | 2회(10%) | 3회(10%) | 4회(10%) | 5회(10%) | 6회(10%) |  |
|  |  |  |  |  |  | 계약시 | 2017. 6 | 2017. 10 | 2018. 2 | 2018. 6 | 2018. 10 | 2019. 2 | 입주시 |
| M5 블록 | 059.9900A | 59A | 1층 | 403동 1~6호<br>404동 3~6호<br>407동 5~6호 | 208,070 | 20,807 | 20,807 | 20,807 | 20,807 | 20,807 | 20,807 | 20,807 | 62,421 |
|  |  |  | 2층 |  | 210,270 | 21,027 | 21,027 | 21,027 | 21,027 | 21,027 | 21,027 | 21,027 | 63,081 |
|  |  |  | 3~4층 |  | 214,570 | 21,457 | 21,457 | 21,457 | 21,457 | 21,457 | 21,457 | 21,457 | 64,371 |
|  |  |  | 5~10층 |  | 218,870 | 21,887 | 21,887 | 21,887 | 21,887 | 21,887 | 21,887 | 21,887 | 65,661 |
|  |  |  | 11~24층 |  | 223,170 | 22,317 | 22,317 | 22,317 | 22,317 | 22,317 | 22,317 | 22,317 | 66,951 |
|  |  |  | 1층 | 409동 3~4호<br>410동 3~4호<br>411동 3~4호<br>412동 3~4호<br>413동 3~4호 | 203,070 | 20,307 | 20,307 | 20,307 | 20,307 | 20,307 | 20,307 | 20,307 | 60,921 |
|  |  |  | 2층 |  | 205,270 | 20,527 | 20,527 | 20,527 | 20,527 | 20,527 | 20,527 | 20,527 | 61,581 |
|  |  |  | 3~4층 |  | 209,570 | 20,957 | 20,957 | 20,957 | 20,957 | 20,957 | 20,957 | 20,957 | 62,871 |
|  |  |  | 5~10층 |  | 213,870 | 21,387 | 21,387 | 21,387 | 21,387 | 21,387 | 21,387 | 21,387 | 64,161 |
|  |  |  | 11~24층 |  | 218,170 | 21,817 | 21,817 | 21,817 | 21,817 | 21,817 | 21,817 | 21,817 | 65,451 |
|  |  |  | 25층 이상 |  | 222,470 | 22,247 | 22,247 | 22,247 | 22,247 | 22,247 | 22,247 | 22,247 | 66,741 |
|  | 059.9900B | 59B | 6,8,10층 | 410동 4호<br>411동 4호 | 213,870 | 21,387 | 21,387 | 21,387 | 21,387 | 21,387 | 21,387 | 21,387 | 64,161 |
|  |  |  | 12,14층 |  | 218,170 | 21,817 | 21,817 | 21,817 | 21,817 | 21,817 | 21,817 | 21,817 | 65,451 |
|  | 084.9900A | 84A | 1층 | 401동 1~4호/402동 1~4호<br>404동 1~2호/405동 1~4호<br>406동 1~4호/407동 1~4호<br>408동 1호/409동 1호<br>410동 1호/411동 1호<br>412동 1호/413동 1호<br>414동 1~4호/415동 1~4호 | 315,460 | 31,546 | 31,546 | 31,546 | 31,546 | 31,546 | 31,546 | 31,546 | 94,638 |
|  |  |  | 2층 |  | 318,760 | 31,876 | 31,876 | 31,876 | 31,876 | 31,876 | 31,876 | 31,876 | 95,628 |
|  |  |  | 3~4층 |  | 325,360 | 32,536 | 32,536 | 32,536 | 32,536 | 32,536 | 32,536 | 32,536 | 97,608 |
|  |  |  | 5~10층 |  | 335,260 | 33,526 | 33,526 | 33,526 | 33,526 | 33,526 | 33,526 | 33,526 | 100,578 |
|  |  |  | 11~24층 |  | 338,560 | 33,856 | 33,856 | 33,856 | 33,856 | 33,856 | 33,856 | 33,856 | 101,568 |
|  |  |  | 25층 이상 |  | 341,860 | 34,186 | 34,186 | 34,186 | 34,186 | 34,186 | 34,186 | 34,186 | 102,558 |
|  |  |  | 1층 | 408동 3호 | 309,460 | 30,946 | 30,946 | 30,946 | 30,946 | 30,946 | 30,946 | 30,946 | 92,838 |
|  |  |  | 2층 |  | 312,760 | 31,276 | 31,276 | 31,276 | 31,276 | 31,276 | 31,276 | 31,276 | 93,828 |
|  |  |  | 3~4층 |  | 319,360 | 31,936 | 31,936 | 31,936 | 31,936 | 31,936 | 31,936 | 31,936 | 95,808 |
|  |  |  | 5~10층 |  | 329,260 | 32,926 | 32,926 | 32,926 | 32,926 | 32,926 | 32,926 | 32,926 | 98,778 |
|  |  |  | 11~24층 |  | 332,560 | 33,256 | 33,256 | 33,256 | 33,256 | 33,256 | 33,256 | 33,256 | 99,768 |
|  | 084.9900B | 84B | 3~4층 | 405동 4호<br>406동 4호 | 326,440 | 32,644 | 32,644 | 32,644 | 32,644 | 32,644 | 32,644 | 32,644 | 97,932 |
|  |  |  | 5~8층 |  | 333,040 | 33,304 | 33,304 | 33,304 | 33,304 | 33,304 | 33,304 | 33,304 | 99,912 |
|  | 084.9800C | 84C | 1층 | 408동 2호<br>409동 2호<br>410동 2호<br>411동 2호<br>412동 2호 | 310,610 | 31,061 | 31,061 | 31,061 | 31,061 | 31,061 | 31,061 | 31,061 | 93,183 |
|  |  |  | 2층 |  | 313,910 | 31,391 | 31,391 | 31,391 | 31,391 | 31,391 | 31,391 | 31,391 | 94,173 |
|  |  |  | 3~4층 |  | 320,410 | 32,041 | 32,041 | 32,041 | 32,041 | 32,041 | 32,041 | 32,041 | 96,123 |
|  |  |  | 5~10층 |  | 330,210 | 33,021 | 33,021 | 33,021 | 33,021 | 33,021 | 33,021 | 33,021 | 99,063 |
|  |  |  | 11~24층 |  | 333,510 | 33,351 | 33,351 | 33,351 | 33,351 | 33,351 | 33,351 | 33,351 | 100,053 |
|  |  |  | 25층 이상 |  | 336,710 | 33,671 | 33,671 | 33,671 | 33,671 | 33,671 | 33,671 | 33,671 | 101,013 |
|  | 084.9700D | 84D | 1층 | 413동 2호 | 310,610 | 31,061 | 31,061 | 31,061 | 31,061 | 31,061 | 31,061 | 31,061 | 93,183 |
|  |  |  | 2층 |  | 313,910 | 31,391 | 31,391 | 31,391 | 31,391 | 31,391 | 31,391 | 31,391 | 94,173 |
|  |  |  | 3~4층 |  | 320,410 | 32,041 | 32,041 | 32,041 | 32,041 | 32,041 | 32,041 | 32,041 | 96,123 |
|  |  |  | 5~10층 |  | 330,210 | 33,021 | 33,021 | 33,021 | 33,021 | 33,021 | 33,021 | 33,021 | 99,063 |
|  |  |  | 11~24층 |  | 333,410 | 33,341 | 33,341 | 33,341 | 33,341 | 33,341 | 33,341 | 33,341 | 100,023 |
|  |  |  | 25층 이상 |  | 336,710 | 33,671 | 33,671 | 33,671 | 33,671 | 33,671 | 33,671 | 33,671 | 101,013 |

-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주택법」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층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포함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이 적용됩니다.
- ■ 상기 공급금액에는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이 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2항 및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선정한 민간사업자 대림산업㈜와 (주)대우건설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공동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대림산업㈜/㈜대우건설]이며, 청약 신청 및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주택형별, 층별 공급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금액

〈단위 : 원 / VAT포함〉

| 구분 | 59.9900A | 59.9900B | 84.9900A | 84.9900B | 84.9800C | 84.9700D |
|---|---|---|---|---|---|---|
|  | 59A | 59B | 84A | 84B | 84C | 84D |
| 확장비용 | 7,070,000 | 7,070,000 | 8,660,000 | 9,040,000 | 7,510,000 | 7,510,000 |

※ 당 사업장은 발코니확장비가 포함된 사업장으로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에도 발코니 확장형으로만 공급함
- • 발코니 확장비용은 공급금액(분양가)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으로 추가 납부하지 않습니다.
- • 발코니 확장비용은 부가세포함 금액입니다.

2. 추가선택품목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빌트인 가전, 붙박이가구, 중문 등)

▣ 플러스 옵션
- • 플러스옵션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 및 발코니확장 계약과 별개이며, 판매일정은 추후 별도로 공지함
- • 플러스옵션 판매가는 공동주택 공급금액 및 발코니확장 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 • 플러스 옵션 품목의 판매일정, 계약내용, 납부일정(계약금,중도금,잔금 등), 납부계좌 및 제품에 관한 사항 등은 견본주택(분양사무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 구분 | 선택안 |  | 설치위치 | 금액 | 비고 |
|---|---|---|---|---|---|
| 59A, 59B | 선택1 | 2대 | 거실+침실1 | 3,300,000 | 택1 |
|  | 선택2 | 3대 | 거실+침실1+침실2 | 4,400,000 |  |
|  | 선택3 | 3대 | 거실+침실1+침실3 | 4,200,000 |  |
|  | 선택4 | 4대 | 거실+침실1+침실2+침실3 | 5,450,000 |  |
| 84A, 84B, 84C, 84D | 선택1 | 2대 | 거실+침실1 | 3,670,000 | 택1 |
|  | 선택2 | 3대 | 거실+침실1+침실2 | 4,600,000 |  |
|  | 선택3 | 3대 | 거실+침실1+침실3 | 4,600,000 |  |
|  | 선택4 | 4대 | 거실+침실1+침실2+침실3 | 5,900,000 |  |

- • 시스템 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 시스템 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임
- • 삼성전자, LG전자 제품 중 선택가능

■ 빌트인 가전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 품목명 | 주택형 | 제품명 및 모델명 | 판매가 | 비고 |
|---|---|---|---|---|
| 빌트인 냉장고 | 전 주택형 | 삼성 TBI냉장고 홈바형 (RS674CHQFSR) | 4,600,000 | 택1 |
|  |  | 삼성TBI냉장고디스펜스형 (RS647LHQFSR) | 6,700,000 |  |
|  |  | LG BIS냉장고 홈바형 (R-L712JCS) | 5,100,000 |  |
|  |  | LG BIS냉장고 디스펜서형(R-L692JYS) | 7,100,000 |  |
|  |  | 냉장고 전면판넬 | 100,000 | - |
| 빌트인 김치냉장고 | 전 주택형 | 삼성(HBRK265VRS)+키큰장 | 1,500,000 | 택1 |
|  |  | LG(R-D222WW(NW))+키큰장 | 1,500,000 |  |
| 빌트인 전기오븐 | 전 주택형 | 삼성 스마트오븐 (HSB-N361B) 36ℓ | 450,000 | 택1 (하단 서랍 포함) |
|  |  | LG 광파오븐 (MZ941CB) 34ℓ | 450,000 |  |
|  |  | 동양매직 스팀오븐 (EONB401SM) 40ℓ | 600,000 |  |

■ 붙박이가구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 품목명 | 주택형 | 제품구성 | 판매가 | 비고 |
|---|---|---|---|---|
| 붙박이장 | 84A, 84B | 침실1 붙박이장 (여닫이형) | 2,100,000 | - 59타입 미판매<br>- 타입별 디자인 및 설치 위치 변경 불가 |
|  | 84C, 84D | 침실1 붙박이장 (여닫이형) | 2,030,000 |  |
|  | 84A,84B, 84C,84D | 침실2+침실3 붙박이장 (침실2,침실3 겸용디자인) | 1,450,000 |  |
| 현관중문 | 전타입 | 3연동 슬라이딩 (금속) | 1,000,000 |  |

■ 플러스옵션 공사비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 아래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플러스 옵션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과 플러스옵션 대금 입금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람.
- • 계약금은 계약 당일 아래의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함.[단, 추후(계약전 등) 가상계좌(동호수마다 다름)를 안내할 경우 반드시 해당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함.]
-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람.
- • 플러스 옵션 품목의 계약내용 및 계약금(10%), 중도금(20%), 잔금(70%) 납부일정 및 납부금액은 시공사가 적의 조정한 별매품(II)공급계약서에 준함.

■ 유의사항
- • 플러스 옵션 설치공사는 입주자 모집공고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내에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 플러스 옵션 품목을 입주자 모집공고에 게시하고 계약자와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시 플러스 옵션 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계약자와 플러스 옵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 본 공고외 플러스 옵션 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름
- • 플러스 옵션 판매가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 • 시공상의 문제 및 계약관리 사유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플러스 옵션 품목 선택의 계약이 불가하며, 계약체결후 변경이나 해약은 불가함.
-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 선정된 제품의 형태,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 플러스 옵션 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 플러스 옵션 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음.(계약전 위치 확인 요망)
-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시 기본제공되는 일반에어컨용 슬리브 혹은 냉매매립배관 및 에어컨용 콘센트는 시공되지 않으며, 판매가 산정시 해당하는 설치비용은 감액하여 반영된 것임.(59A, B 거실, 침실2-에어컨 슬리브, 침실1, 3-냉매배관 기본설치/84A,B,C,D 거실, 침실1-에어컨 슬리브 침실2,3-냉매배관 기본설치)
-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옵션 미선택시 거실은 스탠드형, 안방은 벽걸이형 기준으로 총 2개소의 일반에어컨용 냉매배관이 시공됨.
-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음.
-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높이가 변경될 수 있음.
-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시 에어컨 배관으로 인한 환기 디퓨저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배관 위치 등이 이동(변경)될 수 있으며, 등기구 위치 등 시공여건에 따라 실내기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용량에 맞는 제품으로 설치함.
-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됨.

(단위 : 천원)

| 블록 | 택지비 가산비 |  |  |  |  | 건축비가산비 |  |  |  |  |  |  |  |
|---|---|---|---|---|---|---|---|---|---|---|---|---|---|
|  | 계 | 기간이자 | 흙막이 공사비 | 지장물 철거비 | 기타 비용 | 계 | 건축구조 형식 가산비 | 법정초과 복리시설 설치비용 | 인텔리전트 설치비용 |  |  |  | 친환경 주택건설 추가비용 |
|  |  |  |  |  |  |  |  |  | 홈네트워크 | 에어컨 냉매배관 | 초고속통신 | 기계환기설비 |  |
| 2-1 M5블럭 | 3,490,280 | 2,012,673 | 727,424 | 681,363 | 68,820 | 42,932,421 | 2,685,170 | 7,134,966 | 1,539,887 | 2,867,539 | 3,350,447 | 2,802,690 | 5,938,418 |

### 9.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 블록 | 사업주체(사업자등록번호) | 시공업체(사업자등록번호) | 연대보증인 | 감리회사 |
|---|---|---|---|---|
| 2-1생활권 M5블럭 | 한국토지주택공사 (129-82-10595)<br>대림산업㈜ (116-81-35007)<br>㈜대우건설 (104-81-58180) | 대림산업㈜ (116-81-35007)<br>㈜대우건설 (104-81-58180) |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 | 자체감리 |

- ■ **견본주택 :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154-2 일원**
- ■ **운영기간 : 2016.12.16 개관일부터 운영(주말에도 휴관 없이 개관함)**
- ■ **운영시간 : 10:00~18:00**
- ■ **현장 : 행복도시 2-1생활권 M5블록(세종특별자치시 다정동 363-207번지 일대)**
- ■ **분양안내 인터넷 홈페이지 : www.daelim-apt.co.kr**
- ■ **분양문의 : ☎ 044-863-9980(10:00 ~ 17:30)**

# 12.16(금) 모델하우스 오픈

특별공급 청약일 **2016.12.19(월)~21(수)** 1순위 청약일 **2016.12.22(목)** 2순위 청약일 **2016.12.23(금)**

시행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림산업(주), (주)대우건설
시공사 : 대림산업(주), (주)대우건설

**www.daelim-apt.co.kr** **044)863-9980**